

1997 년도 지방토론회(경남편)

언론의 환경변화와 언론의 중재

안광식 중재위원 · 이화여대 명예교수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중재제도의 효율적인 운용과 대국민홍보를 목적으로 지난 7 월 11 일 창원에서 지역 언론계 학계 법조계 사회단체 등의 인사를 초청, 지방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창원 인터내셔널호텔에서 개최된 이날 행사에 안광식 위원(이화여대 명예교수)의 주제발표와 김현태 위원(창원대 법학과 교수)의 사회로 참석자들의 토론이 있었다. 다음은 주제발표 논문과 토론내용을 정리한 것이다.편집자 주

I. 서 언

21 세기를 앞두고 우리나라의 신문과 방송이 법제적 ·구조적 ·내용적 측면에서 많은 변화를 겪고 있으며, 90 년대 이전의 권위주의적 언론통제의 시대는 과거지사가 되어버렸고, 이제는 상당한 언론자유를 누리면서 신문과 방송이 다원화와 다양화의 양상을 모색하는 '자유경쟁의 시대'에 있다는 것이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다.

언론의 환경변화 속에서 신문, 방송, 잡지 등의 대중매체는 매일같이 우리의 일상생활에 침투하여 사회적 습성을 조성해 주고, 때로는 정치 · 사회적 의견을 형성해 주면서 사회적 여론을 조성하고, 한편 사회적 가치를 부여, 사회적 규범을 설정해 주는 등 사회 · 국가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제는 언론이 '사회적 세력'의 기구로 당당히 군림하고 있다는 것이 조금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그런데 언론이 그 막대한 세력을 순기능적 측면에서 올바르게 사용하면 국가와 사회를 바람직한 발전의 방향으로 이끌 수가 있지만, 그 세력을 역기능적인 측면에서 오용, 악용하면 국민을 오도하고 국가와 사회를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빠뜨릴 수도 있다.

현대사회에서 그와 같이 위대한 세력을 갖고 있는 언론이 바람직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때로는 불행하게도 그 힘을 남용하여 개인의 인권을 유린, 명예를 훼손, 사생활을 침해하는 등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있기도 하다. 그래서 언론은 나름대로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그 하나의 사명과 명제로 되어 있다.

II. 언론보도의 문제점

무엇보다도 언론의 제 1 의 사명은 '진실을 추구'해야 하는 것인데, 언론이 그 기본 명제를 이행하지 못할 때 사회적 물의 또는 언론침해 현상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언론이 어떤 사건과 사회적 과정에 관한 표면적 '사실'을 잘 보도할지는 모르지만, 그 사실이 '진실'인지

'허위'인지의 여부를 때로는 밝혀내지 못한 채 보도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 언론보도에 있어 기본 문제로 지적된다.

뉴스원에 의해서 제공되고, 기자들에 의해서 취재 보도되는 뉴스가 반드시 진실이 아닌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언론의 최고의 가치 기준이 되어야 하는 진실추구에 있어 때로는 차질이 생기게 마련이며, 이것이 언론보도의 문제점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또한 일반적으로 언론에서의 보도가 사건의 '실제적 사실'과 얼마나 정확하게 같을 수 있는가도 때때로 의문의 여지가 있다. 언론에서 제공되는 보도는 소위 '미디어의 사실'로서 제공되는 것인데, 그 언론에서 보도된 사실이 취재원에서 제공된 사실과 때로는 차질이 있기도 하며 '취재원의 사실'은 또한 사건의 '실제적 사실'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건의 진실이 취재원을 거쳐 기자와 편집자를 통해서 미디어에서 신문기사와 방송보도로 제공될 때는 몇 번씩이나 왜곡, 가미, 오염된 보도일 가능성이 있다.

언론의 생명은 무엇보다도 정확성을 기해야 하는 것인데 어떤 사실에 대한 진실과 허위의 여부를 판별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어떤 사실 가운데서 진실을 가려내야 하는 것이 언론의 최고의 가치와 생명일진대, 언론은 그 어려운 사명을 포기할 수 없으며, 만일에 진실을 찾지 못하고 오보 또는 허보로 인권을 유린, 명예를 침해했을 경우 반드시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여기서 일일이 그와 같은 잘못된 보도의 사례를 들지 않더라도 우리는 신문 · 방송 · 잡지에서 그와 같은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한편 신문과 방송은 마감시간이라는 압력과 싸우면서 서둘러서 제작되는 기적의 산물이기 때문에 매체의 속성상 때로는 오보가 불가피 할 경우가 있다. 그러나 신문 · 방송 · 잡지에서 자주 오보를 하게 되면 독자나 시청자들로부터 불신을 받게 되어 언론에 대한 신뢰성이 상실되게 마련이다.

언론이 불명예스럽게도 오보를 가끔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지난 날 불신을 받아왔던 신문 · 방송 잡지가 더욱 체면을 스스로 깎는 격이 되었던 것은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어떤 때는 오보에 의한 허위 사실이 밝혀질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미디어가 오보를 해 놓고도 진위가 밝혀지지 않은 채 세월이 그냥 흘러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상황의 여하에 불구하고 오보 또는 허보가 빈번해지면 허위적 사실에 의한 분위기가 이 사회에 만연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신문이나 방송 그리고 그 밖의 대중매체들은 오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반드시 질 줄 알아야 한다.

그런데 오보의 책임은 언론인들과 함께 뉴스원 측에도 있다. 오보는 물론 대부분의 경우 기자의 부정확성, 해석의 오류, 과잉된 열성, 부주의, 성급한 판단, 고의적 날조 등에 의해서 비롯되기도 하지만, 한편 뉴스원측의 실수, 그릇된 정보제공, 의도적 조작 등에 의해서도 발생되고 있다.

그리고 오보는 마감시간이란 압력하에 서두르는 미디어의 속성 때문에 생기기도 하며, 미디어 간의 격심한 경쟁 때문에 생기기도 한다. 어쨌든 간에 언론이 사회를 불신과 의구의 분위기가 아닌 정상적이고 순리적인 사회로 인도하려면 오보와 허보를 가급적 줄이고 그것에 대한 책임은 물론, 정정보도를 반드시 게재하고 스스로의 잘못을 수용자들에게 시인해야 하는 것이 너무나도 마땅한 일이다.

그러나 우리의 언론풍토에서 아직까지도 오보에 대한 정정보도를 반기는 경우가 드물고, 비록한다손 치더라도 그것을 언론의 수치로 여기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미국의 대부분의 신문에서는 한 주에 3 번 내지 5 번의 정정보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워싱턴 포스트'지와 같은 좋은 신문일수록 다른 신문들보다 오히려 더 많은 정정보도를 하고 있다. '워싱턴 저널리즘리뷰'라는 언론 평론지의 조사에 의하면 모든 신문에서 정정보도의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유는 편집자와 기자들이 오보를 더 많이 하기 때문이 아니라 신문의 영향이 보다 더 강해지고 독자들의 신문에 대한 신뢰도가 더 커져서 더욱 정확성을 지켜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편 보도의 문제점으로 제기되는 것은 미디어에서의 선정주의라고 할 수 있다. 선정주의는 수용자들의 감성에 호소하고 그들을 자극시키면서 오락성을 추구하는 기능이 강하며, 선정주의의 추구는 긴장완화 또는 불만해소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미디어에서의 선정주의는 또한 수용자들에게 값싼 낭만성을 조성해 주고도 있으며, 흥미 본위의 소재를 제공함으로써 호기심과 화제거리를 조성해 주고 있다.

그래서 미디어의 센세이셔널리즘은 올바른 사회적 가치를 부여하고 바람직한 사회규범을 설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 흥미와 오락, 순간적 도피와 시간낭비, 정치에 대한 외면, 사회적 문제의식의 결여, 도덕과 윤리의 퇴폐, 본능적 자극, 공공성보다 상업성을 발휘하는 데 주효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선정주의의 궁극적 목표는 영리추구 이외에 별다른 의미가 없다. 신문이나 방송은 큰 사건이 생기면 으레히 그 내용을 필요 이상으로 확대, 과장하여 보도 편집하는 경향이 습성화 된 것같이 보인다. 그와 같은 경우들은 특히 사회 범죄사건들과 관련된 살인 · 강도 · 치정 · 폭행사건 등에 관한 보도들이다. 그와 같은 기사들이 사회적으로 흥미롭거나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면 신문과 방송의 제작 솜씨는 더욱 선정적 경향을 띠게 된다. 미디어는 또한 범죄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과정 및 결과, 그리고 관련자들의 신상에 관한 경찰의 발표를 거의 빠짐없이 자세히 보도하고, 그 위에 추측과 또 다른 가미 또는 조작된 허위적 사실을 보도하기도 한다.

그래도 미디어가 뉴스가치를 과장하고, 뉴스의 주인공뿐만 아니라 가족 또는 주변인물에 대한 인권 · 명예 · 사생활 · 초상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된다. 잡지의 경우 배우나 탤런트의 사생활에 관하여 특히 이성문제에 관한 기사를 선정적으로 다루는 솜씨는 신문이나 방송보다 오히려 더 심하다고 보여진다.

미디어에서는 또한 피의자에 대한 판결이 나기도 전에 기사와 제목을 통하여 유죄판결과도 같은 '언론재판'을 하는 경우가 가끔 있다. 언론이 성급하게 흥미위주로 사건을 취급하여 보도하는 습성 때문에 생기는 결과이다.

뿐만 아니라 흥미로운 사건과 관련된 보도를 함에 있어 표현의 과장과 저속성, 불필요한 사진의 게재, 그릇된 제목, 사람과 기관의 익명 표시에 있어 암시적 영자의 사용, 쉽게 찾아낼 수 있는 장본인의 주소사용 등, 이 모든 것이 무의식 중에 보도된다 하더라도 뉴스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명예와 사생활을 침해하는 결과가 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요즘 언론이 '공공의 이익'보다 수용자들의 '흥미와 호기심'을 보다 더 염두에 두는 경향이 농후하고, 질적으로 좋은 신문 · 방송 · 잡지를 제작하려는 노력보다 흥미위주의 '오락성과 선정성'을 발휘하여 상업주의에 영합하려는 성향이 짙기 때문이다.

보도에 있어 또 다른 문제는 보도기사는 기자의 의견이 개입되지 않는 객관성에 의거해서 작성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뉴스원에서 취재하고 제공되는 사실에 입각해서 기사를 써야 한다는 것이며, 그것이 보도의 최상의 가치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뉴스 보도에서 객관성이라는 종교적 의식 때문에 미디어가 뉴스를 제공함에 있어 진실과 허위를 곧잘 혼동하고 있다는 것이 보도의 문제이며, 저명인사나 저명기관이 말하고 발표하는 것이면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뉴스가 된다는 소위 객관적 보도방식이 문제라는 것이다. 미국의 CBS 방송사에서 해설위원을 지냈던 에릭 세버라이드(Eric Severeid)는 보도의 객관성이라는 문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 적이 있다.

"뉴스를 규정, 작성, 제공함에 있어 우리의 상습적인 형식이란 것이 우리의 도구가 됨과 동시에 우리의 주인이 되어 버렸다. 소위 객관성이란 엄격한 형식 때문에 허위를 진실과 동등하게 취급하긴 있으며, 우매한 자의 영향을 현명한 자의 것과 같이 승격시키고, 무지한 자를 지식인의 수준으로, 악을 선의 경지로 이끌어 왔다".

현대사회가 복잡다단해짐에 따라 신문과 방송이 보도를 함에 있어 사실의 객관성에 의해서만 기사를 쓴다는 것은 진실을 찾아내기에 어려운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특히 미국에서는 70년대 중반 이후부터 의견기사가 아닌, 뉴스기사에서도 기자가 진실을 찾아내기 위한 주장도 할 수 있는 종류의 보도기사를 쓸 수 있도록 허용하는 소위 '뉴 저널리즘'(New journalism)의 방향을 모색하기도 했으나, 재래적인 객관성에 의거한 저널리즘의 습성은 아직도 세계 도처의 보도적 측면에서 쇠퇴하지 않고 지배적인 영향을 마치고 있다.

그 밖에 보도의 문제로 제기되는 것은 공중의 이익과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무엇을 보도하고 무엇을 보도하지 말아야 하는가에 관해서 어떤 일관된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명확한 규정이나 지침이 사실상 있을 수도 없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기자가 어떤 사실을 보도할 것인가 또는 하지 말 것인가의 기로에 처했을 때 보도의 여부에 대한 가치관만의 기준은 그 기사가 공익 또는 국익에 부합되느냐를 측정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보도를 하는 것이 국익 또는 공익에 부합될 수 있으며, 한편으로는 보도를 하지 않는 것이 국익이나 공익을 초래 하는 길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언론이 진실과 공익 또는 국익을 추구함에 있어 무엇을 보도하고 무엇을 보도하지 말아야 하는가의 보도가치의 기준은 사실상 경우에 따라서 다를 수 있으며, 한 사회가 추구하는 국가적 이념 또는 이데올로기의 가치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

Ⅲ. 언론중재제도

언론중재제도는 언론의 과오 또는 침해로부터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구제하는 동시에 언론의 윤리성을 제고하고 그 책임을 촉구하는 것을 그 취지와 목적으로 하고 있다.

언론중재제도는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에서 과거에는 무방비상태에 있던 언론침해를 구제하여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라는 점에서, 그리고 중재제도는 언론침해를 당했을 때 누구나 부담 없이 간편하게 정정보도 또는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피해자와 언론사 모두가 시간과 비용을 안들이고 쌍방의 이익을 위해서 유리하게 선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이다.

중재신청의 종류로는 반론보도청구, 정정보도청구, 추후보도청구 등 3 가지가 있다. 정정보도청구는 오보 또는 허위보도에 의해 피해를 받은 자가 정정기사를 게재 또는 방송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민법상 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으로 인정되던 것이었는데, 이번 법 개정으로 신청인이 원할 경우 정정보도청구에 대해서도 중재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반론보도청구는 언론에 공표된 내용에 의해 피해를 받은 자가 해당매체에 자신의 반론을 게재 또는 방송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추후보도청구는 범죄혐의가 있다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된 자가,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때에는 자신의 결백을 추후보도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반론보도청구와 정정보도청구를 구별하여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반론보도청구권은 언론의 사실적 주장에 의해 피해를 받은 자가 해당매체에 대하여 피해자 본인의 주장을 게재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이다. 따라서 반론보도문의 작성주체는 피해자 본인이며, 언론사는 반론문게재지면만을 제공할 뿐이다. 다만 청구된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 또는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반론보도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에 대한 입증은 언론사가 해야 한다.

이에 비해 민법상 인정되는 정정보도청구권은 언론의 잘못된 보도로 침해를 받은 자가 언론사 스스로 그 잘못을 시정하도록 요구하는 권리이다. 정정보도문의 주체는 보도의 주체인 언론사 자신이며, 반론보도에 비해 강도가 더 높은 피해회복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반론보도청구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법원에 바로 신청할 수 없으나, 정정보도청구의 경우에는 중재절차와 관계없이 법원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정정보도청구 및 반론보도청구는 문제된 내용의 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 월 이내(다만 사실보도가 있을 후 6 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청구권이 소멸된다)에 서면으로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중재신청이 접수되더라도 신청인 또는 신청내용이 정정보도청구권 또는 반론보도청구권의 성립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담당중재부는 기각결정을 내릴 수 있다. 중재결과 당사자들간에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한편 이번 법개정으로,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중재부는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중재결정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중재결정에 대해 당사자가 불복할 경우, 7 일 이내에 중재부에 이의신청을 하면 그 중재결정은 효력을 상실하지만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합의와 같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물론 중재에 적합하지 않은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중재불성립결정을 하게 된다.

한편 언론중재신청의 대상이 되는 내용의 범위는 대체로 다음과 같다고 할 수 있다. 기사종류 중에서 객관성에 입각해서 쓰여지는 사건기사, 피처, 해설, 심층보도 등 뉴스보도기사는 정정보도의 대상이 되지만, 필자의 주관성에 의해서 작성되는 사설, 칼럼, 문예평론, 독자투고 등은 일반적으로 신청의 범위에 들지 않는다.

그렇지만 사설, 칼럼, 문예평론 등을 제공함에 있어 잘못된 사실에 의거해서 논평이 되었을 경우 그 '그릇된 사실'에 대한 부분적 내용에 관해서는 중재신청 할 수 있다.

우리나라 특유의 중재제도가 탄생한 지 16 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볼 때 중재제도가 이제는 정착단계에 있다고 보여지지만 그 본연의 취지와 기능을 만족스럽게 발휘하였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이미 지적인 바와 같이 저널리즘의 재래적인 관례와 문제점들, 언론침해에 대한 수용자들의 체념, 개인의 권익보호 의식의 결여, 언론사의 외면 등 여러 가지 복합적 요인들이 중재제도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다. 중재제도가 생기기 이전까지는 언론이 사소한 오보를

비롯하여 사회적으로 중대한 허보를 하더라도, 그리고 개인의 권리를 아무리 침해하여도, 그와 같은 사회적 오류에 대한 책임을 누가 추궁하지도 않고 제도적으로 거의 속수무책이었던 것이 사실이다. 언론중재위원회 설립 이후 그 동안 몇 차례의 법 개정을 통해서, 언론침해를 구제하여 주고 언론의 잘못된 보도를 정정 내지 시정하여 주려고 하는 제도가 우리 나라에 존재하고 발전되어 왔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언론의 측면에서는 이 중재제도가 거추장스럽고 귀찮은 존재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그래서 중재제도가 생긴 초기단계에는 언론사의 불출석과 비협조가 비교적 빈번한 편이었다. 그러나 요즘에는 언론사와 언론인들의 중재제도에 임하는 태도가 한결 향상된 것 같고, 특히 일간신문의 경우는 오보에 대한 정정 경향이나 윤리적 측면에서의 보도가 많이 향상되었다고 평가된다.

언론이 진정으로 자유·민주화되려면 언론사가 오보나 허보에 대한 정정보도 및 반론 허용을 기피하거나 싫어하는 풍토에서 벗어나야만 한다. 이미 살펴 본 바와 같이 선진국일수록, 그리고 세계에서 좋은 신문들일수록 정정보도 및 반론 제공을 더욱 빈번히, 그리고 많이들 하고 있다.

이제는 시대적 조류도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언론이 사회적·역사적 진실을 외면하고 인권을 유린하면서 구태의연하게 무책임한 윤리적 횡포의 제왕이 될 수는 없다. 언론의 세력이 커지고 언론자유가 확대될수록 언론이 자신에 대한 사회적·역사적 책임을 더욱 잘 감당할 줄 알아야겠다는 것은 조금도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며, 언론중재제도는 그 무거운 책임을 함께 감당하자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한편 국민 개개인은 법이 보장하는 자신의 권익을 충분히 이해하고 행사할 수 있어야 하며, 언론침해를 받았을 때 정정보도를 적극적으로 청구할 줄 알아야만 민주 국민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할 수 있으면서 언론인으로부터 '진실보도'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한편 국민 개개인은 정정보도청구권이나 반론보도청구권을 남용해서도 안되며 만약에 그것을 오용 또는 남용할 경우 그것은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보아야 한다.

언론중재제도는 긴 안목으로 볼 때 결국은 언론의 신뢰도와 공신력을 향상시키고 언론의 가치와 수준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언론사와 수용자 모두에게 이익과 도움이 되도록 하자는 것이 근본 취지이다.

IV. 결 언

언론의 환경변화와 더불어 언론의 사회적 책임이 더욱 요청되고 있다. 그러나 언론이 자유경쟁의 시대를 맞아 윤리적 측면에서 오히려 하향하는 듯한 감을 주고 있다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21 세기를 목전에 두고 언론의 윤리적 책임의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 방향을 제시해 보려고 한다.

첫째로 한국언론의 정치윤리적 과제는 무엇보다도 정치적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해야 하고, 각 매체의 정치적 특성과 개성이 요청된다.

둘째로 언론이 경제구조상으로 대기업과 광고주의 입장을 대변하는 언론기업으로서의 윤리적문제가 제기된다. 그리고 언론자본의 성격이 사기업적 독점형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이다. 그러나 언론경영과 분리된 편집권의 독립이 요청된다.

셋째는 사회구조적 측면에서 사이버 기자와 사이버 언론의 문제, 광고강매, 신문판매경쟁, 치열한 시청률경쟁, 언론의 세력남용 등의 문제점들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는 보도의 측면에서 언론이 진실추구보다 상업적 이윤추구의 관점에서 뉴스의 가치를 찾고 있으며, 공익 추구보다 자사이익을 앞세우는 경향이 많다는 점에 비추어 보도의 사회윤리적 책임이 요청된다.

다섯 번째는 특수일간지, 주간지, 여성지 등의 잡지와 방송에서 때로는 섹스와 관련된 선정성, 폭력성, 심지어는 외설에 가까운 내용물들을 제공함으로써 부도덕한 비윤리적 경쟁을 벌이는데 대하여 마땅히 사회적 통제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언론의 사회적·윤리적 책임을 추구하기 위한 취지에서 잘못된 보도와 그 밖의 내용물들을 심의·평가하는 방편으로 어떤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가라는 것이다.

바람직한 것은 언론이 스스로 보도의 가치와 윤리성을 올바르게 추구하고 사회적 책임을 유감없이 발휘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심의와 평가를 위한 제조적 장치가 아주 없는 것도 아니다. 자율적 규제규범으로 신문윤리강령과 그 실천요강, 방송심의규정 등이 있으며, 그 제도적 기구로서 신문윤리위원회와 방송위원회가 있다. 그리고 언론중재위원회가 있으며, 각 언론사에서는 보도지침, 스타일북 등이 있고, 신문방송사에 따라서는 심의실 또는 옴부즈맨 제도를 두고 있다.

이상의 상황으로 볼 때 제도적 장치나 윤리적 기구가 부족해서 오보 또는 허보 등으로 진실추구에 차질이 생기거나 언론침해 현상 및 그 밖의 윤리적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닐 것이다. 윤리적문제는 언론의 기본철학의 부재, 정치 사회 구조와 제도의 문제, 언론구조와 관행의 문제, 언론인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의 결여 등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고 보인다.

언론의 다원화와 다양화, 치열한 자유경쟁 등 언론이 급격한 환경변화 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언론의 침해와 횡포, 무분별한 역기능적·반사회적 보도와 제작을 사회가 그대로 방치, 묵인할 수 없으며, 또한 언론이 진정한 보도의 가치를 스스로 찾지 못하고 최소한의 자율적 윤리의 의무와 책임마저 포기한다면 외부로부터의 타율적 심의와 규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계속 유지, 보완되어야 한다는 또 다른 윤리적 과제가 제기된다.

그러나 외부의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기보다는 옴부즈맨(자체평가인) 제도 및 외부의 전문인들과 내부의 언론인들이 함께 참여하는 자체심의·평가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신문방송 전문지들을 통한 미디어 비평가 미디어수용자 주권운동 등이 지금보다 더 활성화 되기를 바란다.

끝으로 언론의 환경변화와 더불어 미디어의 윤리적 책임을 제고하고 언론의 신뢰도와 공신력을 높이고, 언론의 가치와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언론중재제도의 궁극적이념과 존재가치는 사소한 오보에 대한 정정보도와 반론보도를 하여 주도록 중재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라기보다, 언론이 진실을 추구하고, 인간의 기본권리를 존중하며, 공중과 국가의 이익을 추구하도록 하는 일역을 감당하자는 데 있다. 이와 같은 언론중재제도의 기본명제를 국민과 언론이 좀 더 인식, 이해함으로써 언론중재제도가 보다 더 효율적으로 활성화되고, 따라서 언론의 환경변화에 따른 자유언론의 발전과 향상을 도모할 뿐 아니라 우리 사회와 국가의 발전에 언론중재제도가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바이다.